



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('25.3.20.) 후속 「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금융지주회사는 저축은행 '정기'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

- '25.12.16일(화),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「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」(이하 「시행령」)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.
-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.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.
- 이러한 시점 간·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,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.
-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(12.23일 잠정)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이를 통해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준 부담이 경감되고, 나아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참고>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

- **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3의 요건***에 따라 저축은행의 **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는지를 주기적**으로 심사**

*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,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1천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(다만,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외), 재무건전성비율 등

** 원칙 2년(다만, 자산총액 2조 이상 또는 동일계열저축은행인 경우 1년)

- **(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)**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**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유지요건 충족명령 가능***
* 이 경우 10%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
- **(주식처분명령)** 유지요건 충족명령 불이행 시, **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% 이상 처분명령 가능** (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)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장 정종식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 이정민 (02-2100-2993)
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		책임자	국장 곽범준 (02-3145-6770)
		담당자	팀장 이장희 (02-3145-6772)

대한민국
지방브리핑

